

○ 항목별 의미

- **[전문]** 권리헌장 제정의 근거와 목적을 간략히 서술하되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조(목적)에 명시된 안전에 대한 확보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경제발전에 관한 내용을 명시
- **[제1호]**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포함된 내용을 재차 명시
- **[제2호]** 모든 건설기술인이 최근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한 근로 시간, 그리고 임금 등 다양한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정규직/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없이 합리적으로 대우 받을 권리를 명시
- **[제3호]** 건설기술인이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0조(건설기술자의 육성)에 명시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명시
- **[제4호]** 부실시공 예방과 관련된 것으로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
- **[제5호]**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기술인이 책임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, 각종 입·낙찰 비리와 같은 부정·부패 척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의식을 가질 의무를 명시
- **[제6호]** 건설기술인이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가치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